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)

[시행 2017. 10. 27.] [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0호, 2017. 10. 27., 일부개정]
산림청 (사유림경영소득과) 042 - 481 - 4155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) 산림청장이 「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자금지원의 기준 · 방법 · 조건 등) 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부실조합등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조합
2.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조합
3. 부실조합등이 실시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을 이전받은 조합

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「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.

제4조 삭제 <2017. 10. 27.>

부칙 <제290호,2017. 10. 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